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20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조속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촉구하는 바임.

2. 제안이유

- 2019년 4월 14일부터 12차례에 거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으며, 특히 총 5회에 걸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고 있지 않으며 참석한 증인 역시 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비상식적인 피감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드러난 비리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라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결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음.

- 서울시체육회는 승부조작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논란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뒤에나 징계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체육회 내부 감사기능이나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체육회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도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관 및 규약, 제 규정의 위반 등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현 사무국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이 공모하여 승부조작(부정심사, 심사권 회수 및 취소, 정지)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능 및 1인 조직사유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도 판단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